

1. 법률

가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일반기업의 자금조달 기회 확대를 위한 자산보유자 요건 완화)

1. 법률*

가.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(2023/12/19 개정 ·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됨에 따라,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기 위함
 -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 유동화증권의 발행 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9533호, 2023.7.11 공포, 2024.1.12 시행)이 개정

2) 주요 내용

- 자산보유자의 확대(제2조 제9호, 제2조 제9호의2 신설)
 - 기존에는 일부 상호금융 중앙회 · 조합(신협 · 새마을금고중앙회, 농 · 수협 단위조합)만이 자산보유자로 규정되어 있었으나, 상호금융 소 권역의 중앙회 · 조합을 자산보유자로 인정
 - 농업협동조합중앙회, 산림조합중앙회,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도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산부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여 재무구조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
-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요건(제5조의2 신설)
 - 명목상 회사(paper company)인 유동화전문회사를 실제로 운영하고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수탁인의 자격요건을 정비
 -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는 금전 재산을 수탁받는 신탁업자에게 위탁
 - 유동화전문회사의 자금 관리를 제외한 업무는 자기자본의 5억원 이상이고, 변호사 등 전문인력 2인을 포함한 상시 근무 인력 3인을 보유하며, 유동화전문회사 업무와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간의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춘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

* 해당 내용은 매월 1일에서부터 말일까지 개정된 법제처 및 금융위원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- 유동화전문회사 업무를 적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위탁받아 수행하도록 함
-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가 해당 유동화전문회사가 발행한 유동화증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에는 신탁업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허용하고, 자산관리자를 겸임하는 경우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

□ 유동화증권 발행내역 공개의 방법과 절차(제5조의3 신설)

- 유동화증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록·비등록 유동화증권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도입
-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발행내역, 유동화자산·자산보유자 관련 정보,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,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, 신용보강에 관한 사항 등을 지체없이 공개
 -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을 변경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변경일 또는 상환완료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한국예탁결제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

□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의 기준과 절차(제5조의4 신설)

- 자금조달 주체의 책임성 및 유동화증권의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자금조달 주체의 위험보유 의무를 도입
-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 유동화증권 의무보유자는 유동화증권 발행잔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유동화증권을 그 유동화증권의 만기일이나 유동화증권의 상환에 필요한 대금의 회수완료일까지 보유하여 투자 위험을 부담하도록 함
 - 위험보유 의무 위반시 유동화증권 발행 금액의 5%(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억원)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

선임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